

## 경운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규정

**제1조(목적)** 본 위원회는 사회적·시대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, 교직과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본교의 교직 업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 내외의 위원(위원 중 최소한 한명의 외부 인사를 포함한다)으로 구성된다.

② 본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**제3조(임기)** 각 위원장 및 위원들의 임기는 조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회의)**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**제5조(기능)**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.

- ① 교직과정 신규 개설 및 폐지에 대한 심의
- ② 교직과목 교과운영에 대한 심의
- ③ 교직과정 이수신청 및 예정자 선발에 대한 심의
- ④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대한 심의
- ⑤ 교직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예산 심의 및 확정
- ⑥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6조(기타)**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**제7조(위원회 사무)**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